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협은행(이하 “수협”이라 한다)이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수협 소정양식) 1통
2.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통
3.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3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현금(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5.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한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공동으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일단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희망수량에 의한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 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3조에 정한 입찰 보증금이 미달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이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9조(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중 수협이 정하는 예정가격이하의 최저 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협의 수요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 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0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2조(입찰의 연기 등)** ①수협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또는 입찰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협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3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를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수협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수협과 계약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수협의 계약준칙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협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 참가자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17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